

| | |
|-----|--------------------------|
| 접 수 |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기
본법 개정 청원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08월 04일

청 원 인

성 명 : 기하람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기하람 (인) 외 14 인

| | | | | | | 의 장 |
|-----|------|-----|-----|-----|-----|-----|
| 담당자 | 청원담당 | 과 장 | 국 장 | 차 장 | 총 장 | |
| | | | | | | |

청원소개의견서

| | |
|---|------------------------------------|
| 청원인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
| | 성명 : 기하람 |
| 건명 |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청원안 |
| 소개년월일 | 2019년 08월 04일 |
| <p>소개의견</p> <p>청원인 기하람 외 14명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제17회 정기 회의 청소년교육위원회 의원입니다. 제17회 정기 회의 및 청소년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기본법 개정 청원안 > 입니다.</p> <p>학교와 회사 등 우리의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받는 피해가 증가한다고 지적되어왔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도중 성 소수자 비하 발언을 하는 행동과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사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정신질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p> <p>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부산 퀴어 문화축제’ 등 지역별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반면, 국가의 공식적인 성소수자들에 대한 행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p> <p>따라서 남녀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물학적 성 특성만을 고려한 이 일 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이 교육 기본법의 관한 법률 (교육 기본법 제 17조의 4 2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20px;">제17조의 4(건전한 성 의식 함양)</p> <p>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p> | |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은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와의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차별 혹은 간접적인 차별을 받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를 향한 근거없는 차별 및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아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은 성 소수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때문에 성소수자들 또한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한국사회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정당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유보하고, 이들을 정신적 장애로 진단하거나 에이즈 전파의 주범, 변태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편견까지 더한 사회적 인식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들에게 소외감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학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리고, 학생에게 생활기록부 별점을 주거나 강제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수업 중 선생님들께서 성소수자를 희화화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다른 성소수자들도 엄연히 인권을 가졌으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성 정체성과 사회적 성 정체성이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정부의 개입, 즉 교육기본법 제17조제5항의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2. 주요 골자

현행 교육 기본법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교육 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 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생물학적 성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구문 대조표

| 현행 | 개정안 |
|--|---|
| 교육 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 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 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생물학적 성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기대효과

위 개정안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성 정체성 확립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소수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는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위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누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원인 성명 : 기하람

청원인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한라@ 107-1201

청원인 전화번호 : 010-6676-4644